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7

제 출 일 : 2024. 8. 23.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할인율 및 할인 구매한도 확대 관련 단서를 신설하여 재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비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할인율 및 할인 구매한도 확대 관련 사항 단서 신설 (안 제5조제4항)

3. 참고사항

- 부서협의결과
 - 1) 협의기간 : 2024. 6. 12. ~ 2024. 7. 3.
 - 2) 혐의결과
 -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입법예고 결과
 - 1) 예고기간 : 2024. 7. 11. ~ 2024. 7. 31.(20일)
 -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과 할인 구매한 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지역경제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지역경제과장 임 대 훈		
	팀장 직위·성명	생활경제팀장 임 양 원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성 은 (031-590-873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남양주사랑상품권 활성화	제5조(남양주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 ③ (생 략)	시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	4
라 남양주사랑상품권 구매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개	
인에게만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u>다만, 재난, 경기 침체로</u>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등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인율과 할인 구매한도를 별도로
	<u>정할 수 있다.</u>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u>제4항</u> 에 따른 경품 제공의	⑥ <u>제5항</u>
대상, 방법, 범위 등은 별표에	
따른다.	
제10조(특별할인가맹점의 지정 및	제10조(특별할인가맹점의 지정 및
해지) ① <u>제9조제1항 또는 같은</u>	해지) ① <u>제9조제1항</u>
조 제3항에 따른 가맹점 중 특	
별할인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장에게 특별할인가맹	
점 지정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	I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5조제4항 단서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조(남양주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 ③ (생 략)	제5조(남양주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사 랑상품권 구매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	4
에서 개인에게만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u>다만,</u>
<단서 신설>	재난,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과 할인 구매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착한가격업소 남양주사랑상품권 추가할인(5%) 국비지원 사업 추진(2회추경 반영)
- 2. 미 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3조제2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남양주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할인구매 한도 단서를 신설하여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지원사업 추진 예정으로 소요예산이 1억 미만임.
 - 소요예산(예정) : 13,400천원(국비(3%) 8,000 / 시비(2%) 5,400)
- 4. 작성자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24A경기남양043)

- 1. 지역경제과-17632(2024, 6, 14.)호와 관련입니다.
-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불입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불임 검토의견 통보서(2024A경기남양043) 1부. 끝.



전략 2024, 6. 14. 여성정책팀장 김윤영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복지국장 주무관 이연회 쇠재용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17146 접수 지역경제과~17718 (2024, 6, 14,) (2024. 6. 14.)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훈로 1037, (급곡동), 여성아동파 / http://www.nyl.go.kr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남양043				
정 책 명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소관부서	부서명	지역경제과			
	담당자명	이성은	전화번호	031-590-873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6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지역경제과)	 ○ 제・개정 목적 및 주요내용 - 재난, 경기침체 등 필요시에 별도의 할인율과 할인 구매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지원사업과 같은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 할인율 및 할인 구매한도 단서조항 신설 - 법령 용어 정비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섯별영향평가법」제8	해당 없음 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성별영향평가법」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연희/031-590-3965)

지역경제과장 귀하

붙임3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 오늘짜 내일을 있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십 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부패명향평가 결과 알림(2024-45)

지역경제과-17790(2024.8.17.)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백영향평가 결과를 불일과 같이 일려드립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가 결과 : 원안동의

불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골.

갑 사 세광근

주무권 김주현 청염유리팀장 신경주 강시관 서상군 협조자

시형 감사균-8998 (2024. 8. 19.) 접수 자역경제과-18141 (2024. 8. 19.)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검춘로 1037, (금국동) / http://www.nyl.go.kr

전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2079 /sh99008년Worea.kz /비공개(5)

- 정박용의 도시 남양주 !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 번호	2024-남양주-45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가담딩 직급 및 상		행정7급 김주현
입 안 부 서	지역경제과		입안담딩 직급 및 성		행정7급 이성은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4. 6. 19.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런 조 문 검 토 결		<u> </u> 과	조 치 사 항		
_		_		_	

2024년 6월 19일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

(담당자 / 연락처 : 김주현 / 031-590-4719)

지역경제과장 귀하

붙임4 규제심사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있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지역경제과장

(경유)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1. 남양주시 지역경제과-17625(2024. 6. 14.)호와 관련됩니다.
- 2.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해당 개정안은 인센티브 지급 범위의 일시적 확대에 관한 내용 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상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4; 6, 14, 규제개혁팀장 남상명 주무관 의회법무과장 图 制刀 불선기 현조자 접수 지역경제과-17668 시행 의회법무과-7519 (2024, 6. 14,) (2024. 6. 14.)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훈로 1037 (공곡동) / http://www.ny].go.kr

붙임5 입법예고 결과 보고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법예고 결과보고('남양주시 남양주시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지역경제과-20537(2024. 7. 11.)호와 관련입니다.
- 2.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밀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7. 11.(목) ~ 7. 31.(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의견제출 0건

마.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불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주무관 이성은 생활경제팀장 임망원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재정경제국장 이백명

협조자 의회법무팀장 김설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시행 지역경제과-23062 접수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별관4층 지역경제 / http://www.nyj.go.kr 과 (금곡동)

전화번호 031-590-8731 팩스번호 031-590-2739 /lse201@karea.kr /부분공개(5)